OPEN ACCESS

한국학 제47권 제1호 통권 174호 255~301쪽
doi: 10.25024/ksq.47.1.2024.3.10

조선시대 물고입안의 운용 양상과 법제적 특징

권이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isun003@aks.ac.kr

Ⅰ. 머리말
Ⅱ. 물고의 용례와 물고입안 관련 법제
Ⅲ. 현전하는 물고입안의 내용과 특성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조선시대 살옥(殺獄)은 당시 어느 재판절차보다도 신중했다고 평가받는다. 사형과 직결되는 생명형(生明刑)과 관련되어 범인의 자복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위해 검험(檢驗)을 거쳤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복검(覆檢), 삼검(三檢), 사검(四檢)이 진행되기도 했다.[1] 이러한 검안 자료는 시기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작성된 것이 많이 남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여성의 폭력 노출 정도,[2] 당대 향촌사회, 검안 자료 자체 검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3] 최근에는 검안의 자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송(山訟)과 접목한 연구가 시도되거나, 검안에 그려진 흉기에 주목하여 해당 자료가 가지는 과학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연구도 진행되었다.[4]

이처럼 검안은 형옥(刑獄)의 주요 자료 중 하나로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검안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될 때에는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과 형사판례집인 『심리록(審理錄)』도 복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의 처리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법의학, 사회사, 생활사 부문까지 연구가 확대되었다. 덧붙여 검시 이후 만들어지는 발사(跋辭) 작성법과 주의점 등이 담긴 실무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심희기, 「朝鮮時代의 殺獄에 關한 연구 (Ⅰ)」, 『법학연구』 25-1(1982).

2 백옥경, 「여성과 법, 제도: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경상도 지역의 검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2009).

3 심희기는 앞의 논문에서 초검 절차, 법의학서 보급과 종류, 검시 관련 법규, 屍帳 작성 과정 등에 관해 밝혔다. 이후 김호, 「검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향촌 사회 (2): 여성」, 『문헌과 해석』 4(1998a), 김호,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1998b); 김호, 「검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향촌 사회(3)」, 『문헌과 해석』 6(1999)가 이루어졌다. 검안 소장처와 형식 등에서는 심재우, 「조선후기 人命 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1997)가 있다.

4 심재우, 「檢案을 통해 본 한말 山訟의 일단」, 『고문서연구』 50(2017); 조영준, 「조선말기 살인사건 조사의 과학성 검토 1895-1907」, 『규장각』 48(2016).

검안 작성서 『검고(檢考)』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졌다.[5] 다양한 선행 연구는 본질적으로 검안 자체에 집중하여 검안을 자료로서 활용한 연구, 또는 여기서 파생되는 시장(屍帳), 시형도(屍型圖) 등 검시 과정에 집중한 연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검시 체계와 보고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조망되지 못한 과정으로 물고입안(物故立案)의 발급 절차가 있다. 물고입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된 증빙문서인 입안의 일종으로 일종의 사망 확인서이다. 그러나 여타 매매사급입안, 결송입안, 계후입안, 절수입안과는 문서의 용도와 시효 면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위 입안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발급 이후 권리가 뒤따랐으나 물고입안의 용도는 권리의 보장이라기보다 역의 의무 면제 용도였다.

물고입안은 검시 이후 제작됐는데 기존에는 물고입안에 대해 관에서 물고를 증빙하는 문서이며 공천(公賤)이나 군사 등 미천한 이들에게 발급되는데 쓰였다고 정의했다.[6] 또는 상복사(詳覆司)에서 초검·복검의 결과를 상세히 검토하여 사망원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발급했는데, 가족에게 시체를 인계하여 매장을 지시하는 용도였다고 인식했다.[7] 따라서 물고입안의 발급 대상자, 절차, 내용과 형식을 포함한 현전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물고입안에 대한 정의 역시 국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정의에 대해 기능적 분류를 해 보면 하위 신분층에 해당하는 공천을 중심으로 수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와 발급 관청에 중점을 둔 견해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급자의 신분에 방점을 두었다. 반면 형조 관서 중 하나로 사형수의 복심(覆審)을 담당하는 상복사에서 발급되었다는 견해는 관서의 역할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상이한 정의는 현재까

---

5 김호, 「『檢考』, 19세기 전반 지방관의 檢屍 지침서」, 『조선시대사학보』 72(2015).

6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4).

7 유덕열, 「조선시대 檢驗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지 실물 물고입안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여겨진 배경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8] 주로 살옥에 대한 연구는 검시의 절차, 실제 발생한 살인사건의 심리 사례에 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 조정에서 토의된 다양한 물고입안에 관한 법제와 운용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응문각인(應問各人)의 진술과 응참각인(應參各人)의 조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관에서 정리되어 시친(屍親)에게 인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특히 조선시대 행해진 검시의 실시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실체적인 진실 요소가 강했지만 관념적으로 이해되고는 했다. 당시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기에 양반관료제의 명예, 여성의 정조(貞操) 관점, 영혼불멸사상, 조상숭배와 같은 관념적인 요소와 풍토로 인해 양반은 검시를 꺼렸던 것으로 인식했다.[9] 검시 자체가 죽음을 증명하는 실용적인 과정이며, 검시 이후 발급되는 물고입안은 사망 증빙의 기초로서 증거가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검시와 연계된 물고입안 발급의 현실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요컨대 사체(死體)를 검시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검시의 일차적 목적 외에도 왜 관에서 중심이 되어 사망을 확인해 주는 물고입안을 발급했는지 부차적인 요인까지 아울러 살펴볼 부분이 있다.

즉, 당시 조선의 국가 운영과 제도적 정비 속에서 물고입안의 관계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태어나고 살아서는 호적에 기재되고 죽어서는 물고입안을 발급받는 것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민(民)의 생사(生死)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당시 수취 체계가 개개의 인적 구성에게 부과되던 구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체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검

8 최연숙, 앞의 논문, 166쪽.

9 심희기, 앞의 논문, 253~256쪽.

시를 꺼리는 관념적 인식과 이후 작성되는 물고입안의 발급 목적이 가지는 사회적 인식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진정한 의미로서 당대 검시가 가지는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기 사료에서 나타나는 물고입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물고입안의 발급 대상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조선시대 법전에 근거하여 물고입안은 신분이 미천한 자들이 주로 발급받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반드시 신분으로 한정하여 물고입안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상자는 신역(身役)에 의무가 있는 양천(良賤)이라면 모두 대상자였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당시 수취 구조와 결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현전하는 6건의 물고입안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래된 입안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친자(屍親者)에게 발급되는 입안의 내용과 문서 형태, 구조, 문서식, 발급 절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물 문서를 통해 그동안 검안을 통해서만 확인되던 검시 참여자 중 어떤 이들이 무슨 역할 때문에 물고입안 발급을 위한 공증인으로 선정되어 공초(供招)를 납부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물고입안의 특징을 도출한 뒤 조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어떻게 이 문서에 표현되었는지도 알아보겠다.

Ⅱ. 물고의 용례와 물고입안 관련 법제

1. 물고의 의미와 물고입안 법령 관련 논의

물고(物故)의 용례는『한서(漢書)』소무전(蘇武傳)에서 확인된다. “선우(單于)가 소무(蘇武)를 따라왔던 관속들을 모았는데, 전에 투항한 자들과 물고된 자들을 제외하고 소무를 따라 돌아간 자가 아홉 사람이었다.”는 구절이 있다.

중국 당나라의 학자 안사고(顔師古)는 여기서 물고란 죽음을 뜻한다고 주(注)를 달았다.[10]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는 귀물(鬼物)과 한 가지가 된지 오래다[故]는 해석과 복용(服用)하던 물건이 모두 옛 것[故]이 되었다는 견해, 물(物)은 무(無)이고 고(故)는 사(死)로 대응되어 '죽은 자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11]

중국의 사서(辭書) 『석명(釋名)』에도 한나라 이래로 죽음을 물고라고 일컬었는데 만물이 모두 썩어 낡은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했다. 이를 통해 중국어에서 쓰인 다양한 죽음류의 어휘 중에 물고는 '사후·사체의 변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분류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어의 망고(亡故), 신고(身故), 물고(物故), 병고(病故), 대고(大故), 작고(作故)를 제시하며 모두 '고(故)' 자로 인해 '죽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게 되었다고 풀이했다.[12]

그러나 중국 명대(明代)에는 일반적으로 물고가 죽음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못했던 듯하다. 『표해록(漂海錄)』의 저자 최부(崔溥)와 명의 환관 나 태감(羅太監)이 나눈 중국과 조선의 어휘 차이에 대한 대화를 통해 짐작된다. 중국에서는 작고(作古)가 이미 고인이 되었음을 의미했고, 이 무렵 조선에서 대응되는 말로 물고가 있었다. 나태감은 물고의 의미를 알지 못해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데, 이때 최부는 경국대전의 두 번째 주해의 견해와 유사하게 설명해 주었다. 즉, 물(物)은 일[事]이고 고(故)는 없음[無]이므로 '죽은 사람은 다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안내했다.[13]

---

10 成海應, 『周漢雜事考』, "漢書蘇武傳 前以降及物故 凡隨武還者九人注 師古曰 物故謂死也 言其同於鬼物而故也 今制以罪死者稱物故".

11 "物故 謂死也 言其同於鬼物而故也 一說 不欲斥言死 但云其所服用之物皆已故耳 高堂隆曰 物無也 故死也 言死者 無所復能於事". 한우근·이성무·민현구·이태진·권오영(역),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2 손민정, 「중국어의 '죽다'류 어휘에 관한 고찰」, 『중국문화』 41(2004), 9~14쪽.

13 崔溥, 『漂海錄』 권2 무신년 2월 18일.

우리나라에서 물고가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기는 늦어도 고려시대부터였다. 일연(一然)이 저술한『삼국유사(三國遺事)』권5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신문대(神文代)의 기록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었다[未幾城物故]."라고 하여 죽음을 물고로 표현했다. 일연이 술이부작(述而不作)에 따라 신라시대에 작성된 기록물을 그대로 옮겨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문장으로 창작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선뜻 신라에서 물고가 죽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최소 일연이『삼국유사』에 김대성의 일을 기록했을 무렵에는 물고가 죽음이라는 맥락으로 쓰였다.

『고려사(高麗史)』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물고의 용례가 14건 확인된다. 1128(고려 인종6)에서 1363년(고려 공민왕12) 동안 세가(世家)와 지(志)에서 확인되는 물고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파악한 업무와 관련된 죽음이었다. 예를 들어, 호구(戶口) 파악 속에서 죽었다는 의미 내지 말·산양과 같은 가축의 죽음이었다. 유사하게 열전(列傳)에서도 물고는 전쟁 중 전사했거나 수군의 죽음, 사졸과 말의 죽음을 통칭했다. 이를 통해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죽음에서도 물고가 구분 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유사했다.[14] 1430년(세종 12)에 한성부 오부(五部)와 성저(城底) 10리에서 소와 말이 죽으면[物故牛馬] 검사하여 입안을 받도록 했다.[15] 여

14 조선시대 형사재판이나 추국 중에 범죄 혐의자가 拷訊을 받다가 의도치 않게 사망했을 때 그 죽음을 가리켜 물고라 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김우철,「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민족문화』35(2010); 이하경,「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추안급국안』사례를 중심으로」,『법사학연구』63(2021); 정진혁,「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한국사연구』196(2022); 정진혁,「17~18세기 추국청의 혹형, 낙형 시행 추이」,『역사학보』256(2022); 조윤선,「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조선시대사학보』48(2009); 조윤선,「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민족문화』58(2021) 등이 있다.

15 『世宗實錄』12년(1430) 4월 14일.

표1-『高麗史』에서 보이는 물고 용례

권책	일자/구분	내용
권15, 世家 卷第十五	1128년 (인종 6) 12월 24일	… 及自脅從 幷逃移戶口其數頗多 皆稱物故 殆未可亮 …
권16, 世家 卷第十六	1130년 (인종 8) 3월 17일	① … 洎其金子鏐入朝 所上表內 妄稱 投入戶口 交付之事 旣積歲年之久 復由風土之殊 罔有安存 悉皆物故 許令小國 當取便宜 … ② … 若計前後新舊戶口 其數不少 無因俱爲物故 …
권16, 世家 卷第十六	1130년 (인종 8) 12월 17일	… 及自來脅從 幷逃移戶口 其數頗多 皆稱物故 殆未可亮 …
권82, 志 卷第三十六	1145년 (인종 23)	仁宗二十三年 判 “西北面諸城州鎭官馬 齒老及物故者 以官馬寶及他諸寶 公須屯田科 空亡雜位所收 買賣充立 勿使徵斂貧乏百姓.”
권23, 世家 卷第 二十三	1232년 (고종 19) 3월 13일	…又閱淮安公侹所蒙手簡 稱 ‘你國選揀人戶, 赴開州館, 及宣城山脚底住坐種田’ 竊思 大國所以割與分地 將使吾民耕食 則其義在所欣感 然我國每處 人民牛畜 物故損失者大夥 故這一國區區之地 尙不勝耕墾 忍使鞠爲茂草 況於邈遠大國之境 將部遣甚處人物 使之耕種耶 …
권23, 世家 卷第 二十三	1232년 (고종 19) 4월 12일	… 又稱 諸般工匠遣送事 我國工匠 自昔欠少 又因饑饉疾疫 亦多物故 …
권80, 志 卷第三十四	1253년 (고종 40) 6월	… 諸宮院 內外兩班 大小寺社 不實穀食 據給年遠 一切放下. 諸州·府·郡·縣百姓 受公私穀食 物故者 雖入秋成 依前判 死及流配 勿徵之意 並蠲除. 殘亡尤甚州縣輸養帳 限庚戌年以上 全放 …
권82, 志 卷第三十六	1308년 (충렬왕 34) 8월	… 西海道岾嶺 至七站 及會源·耽羅 指沿路站戶 頃在東征時 以各道人戶 幷流移人物 限年入居 至今因循未遞 或有物故 令本邑 充其數 馬匹亦如之 怨咨尤甚 …
권79, 志 卷第三十三	1363년 (공민왕 12) 5월	… 十二年五月 敎曰 “債負無文契 元借錢人已物故者 斷自辛丑十一月以前 並不許追徵 其質當子女者, 計傭 令歸父母.
권110, 列傳 卷第 二十三	金倫	…有甲乙二人爭家口. 乙曰 “先世嘗訟于臺 知臺姓許者按分之. 甲所得物故無粤孽 乙家幸得蕃息. 遺火亡其籍 甲幸災誣乙爲兼幷爾.”…

권책	일자/구분	내용
권110, 列傳 卷第 二十三	李寶林	… 有甲乙二人爭家口. 乙曰 “先世嘗訟于臺 知臺姓許者按分之. 甲所得物故無甥孽 乙家幸得蕃息. 遺火亡其籍 甲幸災誣乙爲兼幷爾.” …
권113, 列傳 卷第 二十六	安祐·金得培·李芳實	… 追至賊屯 賊盡銳迎擊之. 祐等敗 千戶吳仲興·將軍李仁祐死 土馬物故者多.
권113, 列傳 卷第 二十六	鄭地	… 九年又與倭戰 大破之 禒賜金帶一腰·白金五十兩. 時方春 疾疫大興 舟師物故大半.
권114, 列傳 卷第 二十七	池龍壽	…是役也 風雪沍寒 道途冰滑 土馬多物故者 …

기서 입안이 발급될 때 고기에는 표(標)를 붙이지만 가죽에는 붙이지 않아 몰래 가죽만 매매하는 폐단이 발생했다.[16] 소와 말 같은 짐승의 죽음에 물고입안이 발급된 것인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공천(公賤)이 죽을 경우에도 발급되었다.[17]

물고입안은 물고(物故)와 입안(立案)의 합성어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예로부터 물고는 죽음을 의미하며, 입안은 조선시대 관에서 발급해 주던 공증 문서이다. 물고입안은 때론 물고장(物故狀), 물고문안(物故文案), 물고문자(物故文字), 검시입안(檢屍立案), 물고공문(物故公文) 등 다양하게 명명되며 사용되었다. 법전에는 한성과 외방(外方)으로 구분하여 담당자, 과정, 작성 부수까지 제정되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비한 배경에는 이른 시기부터 물고를 사칭하며 도망가는 관사 노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1472년(성종 3)에 형조는 제사(諸司)의 노비가 자신들의 고역(苦役)을 싫어하여 물고를 사칭하고, 인족(隣族)과 색리(色吏)들도 뇌물을 받으며 상응(相應)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6 최연숙, 앞의 논문, 165쪽.

17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

이는 검시를 아전의 손에만 맡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물고한 자를 검시할 때 서울에서는 형조와 거주하는 부(部)의 관원이, 외방에서는 수령이 아전과 사령을 거느리고 일족(一族), 절린(切隣), 이내(里內) 색장 등에게 공초(供招)를 받아 입안하며 3건을 기록해 1건은 본도의 관찰사에게, 1건은 해당 관사나 해당 고을로, 1건은 죽은 자의 친족에게 주도록 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경우 허록(虛錄)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 1655년(효종 6)에 노비문안 중에는 100여 년 전에 죽은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했다. 효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쇄어사를 보내 병농(兵農)을 분별하도록 했다.[19] 그러나 채 10년이 안 돼서 간사한 속임수가 여전했다. 이에 1663년(현종 4)에는 공천으로서 죽은 자가 있을 경우 중앙의 정부(政府)·삼사(三司)부터 외방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검시를 하도록 했다.[20]

조선 초기인 1439년(세종 21)부터 한성부에서 검시장식(檢屍狀式)이 간행되어 반포된 사례,[21] 이후 형조에서 간판(刊板)하여 인출(印出)되기도 한 전례[22]를 고려하면 시체를 검사하여 공증하는 검시제도는 일찍부터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23] 그러나 잘 지켜지지 못해서 1668년(현종 9)에 "사망한 시신을 검시할 때 수령이 반드시 시체를 머물러 둔 곳에 직접 간 뒤에 입안을 작성해 준다."는 승전(承傳)이 있게 되었다.[24] 조선 초인 1472년(성종 3)에 일족, 절린, 색장 등에게 공초를 받아 입안을 작성해 주도록 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

18 『成宗實錄』 3년(1472) 3월 23일.

19 『孝宗實錄』 6년(1655) 1월 29일.

20 『顯宗改修實錄』 4년(1663) 8월 15일; 『承政院日記』 顯宗 4년(1663) 8월 15일.

21 『世宗實錄』 21년(1439) 2월 6일.

22 『世宗實錄』 28년(1446) 5월 15일.

23 『經國大典』에 한성부의 역할 중 檢屍가 있고, 五部에서는 人屍의 檢驗을 맡도록 규정지은 것으로 미루어 검시는 조선 초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24 『典錄通考』 刑典 下 檢驗. 이후 이 조문은 『續大典』 刑典 檢驗條에 수록되었다.

하고 1668년에 다시 이러한 수교가 있었다는 것은 검시에 소극적이었던 수령의 세태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검시 이후 사망 증빙서에 해당하는 입안 발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현종의 수교는 이후『속대전(續大典)』에 수록되는데 세주로 검시해야 하는 지방관들이 규례대로 진행하지 않음을 꼬집는 조목이 이어진다. 이는 검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수령을 규율하고자 한 법조(法條)로 생각된다. 이후에도 절차상 입안을 발급해 주는 결정권은 해당 관할 수령에게 있었으므로 수령에게 입안 작성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검시의 절차를 한층 정비했다.[25]

2. 검시 대상자와 물고입안의 발급 관계성

조선시대 조정에서 이루어진 물고입안 관련 논의와 여기에서 파생된 법령은 주로 노비를 대상으로 했다. 노비가 살아 있으면서 거짓으로 물고입안을 성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시의 시행을 권고했다. 이처럼 물고입안의 발급에는 검시가 선제됐으므로 검시 대상자를 살펴봄으로써 물고입안의 발급 대상자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검시 대상자는 법에서와 같이 공천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죄인이 물고한 경우에도 검시를 하는 것이 상법(常法)이었다.[26]

대표적으로 조선 전기 재상인 원계검(元繼儉)의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원계검이 권신 이량(李樑)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방귀전리(放歸田里) 되었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원계검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를 검시하도

25 현종 4년 8월 15일의 논의는 '刑曹受敎類'에서 1723년(경종 3) 죽은 노비의 검시에 대한 조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26 『明宗實錄』 21년(1566) 11월 16일.

록 계문(啓聞)이 있었다. 그러자 사인(舍人) 기대승(奇大升)은 원계검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오랫동안 높은 재상의 반열에 있었으므로 그의 관을 열고 검시하는 것은 성덕(盛德)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검시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27] 기대승의 주장에 곧장 사헌부에서는 품질과 범죄의 구분 없이 죄를 지었다면 죄인 검시법에 따라 검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상법을 한 번 폐하면 뒷날 폐단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였다.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 명종은 기대승의 손을 들었다. 재상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고 반역에 관계된 죄인이 아닌데 검시까지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사족(士族)이 검시를 받는 것을 꺼려했던 풍토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상이었을지라도 죄인인 자는 검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벼슬에 종사하던 관직자도 그 죽음이 의심쩍으면 검시 대상자가 되었다.[28] 1489년(성종 20)에 봉상시 주부 노모(盧瑁)와 충청도 경차관 정숙지(鄭叔墀)가 함께 경상도로 가야 했는데, 노모가 먼저 밀양에 갔다가 병사(病死)한 일이 있었다. 5년 뒤 정숙지가 도사 정륜(鄭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은 그때 노모가 술에 취하여 기생과 누웠는데 아무개가 노모의 음경을 베어 죽였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노모의 죽음에는 당시 밀양 부사 허혼(許混)의 은폐도 있었음을 듣게 되었다. 허혼은 노모의 시체를 두껍게 싸 피가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한 뒤에 봉상시 서리와 종에게 뇌물을 주어 이 사실이 탄로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다.[29] 도사 정륜은 이 말을 노모의 사촌형인 연원도의 찰방 권광필(權光弼)에게서 들었다고

27 『明宗實錄』 21년(1566) 11월 16일.

28 평창현령을 지낸 李世茂의 사례가 있다. 葬事까지 했는데 타인이 이세무의 사체를 손상시켰다는 소문이 돌자 관에서 시체를 꺼내 검시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成宗實錄』 24년(1493) 1월 7일.

29 『成宗實錄』 24년(1493) 6월 5일.

했다. 이에 정숙지가 충주 교수 김수현(金秀賢)에게도 사건의 진상을 물었는데 정륜의 말과 동일하자 노모의 죽음에 얽힌 전말을 복명(復命)하기에 이르렀다. 성종은 승정원에 전교하여 즉시 국문(鞫問)하도록 했다. 승정원에서는 그 당시 노모를 수행했던 봉상시의 노(奴) 고음금(古音金)을 잡아왔다. 고음금이 기억하기로 당시 노모가 두통이 있다고 하면서 방 안에 누워 있었다가 병세가 점점 심해져 코피가 그치지 않았고 결국 7~8일 뒤에 죽었다고 상술(詳述)했다.

정숙지의 진술과 차이가 나자 이 문제는 의금부로 회부되었다. 의금부에서는 노모가 죽은 원인을 알 방법이 없으니 관을 파내 증험하기를 청했다.[30] 그러자 대다수 관료들은 증험에 비관적이었다.[31] 먼저 윤필상(尹弼商)은 사실을 밝혀내려면 마땅히 검시를 해야 하겠지만 관을 열고 시체를 보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아뢰었다. 이극배(李克培) 또한 5년이 지났으니 무덤을 파낸다 하더라도 증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정숙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노모가 죽었던 5년 전에 처자(妻子)와 친척들이 고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관에 고한 사람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노사신(盧思愼)은 현실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기가 어려운 사건의 장소성 문제를 짚었다. 사건 발생지인 밀양은 큰 고을이었다. 따라서 보는 눈이 많아 수령이 숨기려고 하여도 숨기기 어려우며, 남의 무덤을 파서 노모의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극배의 주장을 옹호하며 노모의 신체가 썩어 없어지기 쉬우니 검시하여도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30 『成宗實錄』 24년(1493) 8월 11일.

31 검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鄭文炯과 尹孝孫은 정확히 노모의 죽음을 달로 계산하면 4년이며 시체의 부패 정도를 관을 열어 보기 전까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관을 열어서 노무의 음경이 그대로 있다면 이 옥사는 자연히 해결되므로 의금부에서 아뢴 바대로 검시하는 것이 적당하는 입장이었다.

조정 관료의 논의를 통해 옥사가 접수되면 실정을 밝히는 일이 중요했고, 그중 검시는 사망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손쉬운 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검시에 관한 의논을 살펴보면 사족의 검시는 조심스러웠고 가급적 행해지지 않았다. 후대인 1755년(영조 31)에는 역적의 아내를 정형(正刑)하는 법을 없애라는 명이 내려졌다.[32] 영조는 잡직(雜職) 양반 이상의 처는 비록 살인죄를 범해 정법(正法)했더라도 검시하지 말 것을 유시(諭示)했다. 그렇다면 최소 이 유시 이전까지는 특정 죄에 연루된 양반 이상의 처 역시 검시 대상자였을 것이다.

1677년(숙종 3)에 있었던 서창령(西昌令) 경빈(烱彬)의 요청을 통해서 종실(宗室)은 검시뿐 아니라 물고입안 발급 대상자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33] 경빈은 종친이 받는 물고입안을 변통시켜 주어 군역, 천역(賤役)들과 구별 되는 왕실 후예의 우대를 요청했다. 경빈은 종친위(宗親衛)가 생전에 번포(番布)를 내고 죽은 뒤에 물고입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입안이 없으면 백골에 번포를 징수하는 행태가 마치 보통의 군병이나 천역과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34] 물고입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만 없애 버린다면 뒷날 폐단을 막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거행하자는 비변사의 계(啓)를 숙종이 윤허했기 때문이다. 경빈의 언급을 통해서 물고입안 발급 대상자는 주로 군역, 천역과 같은 자들이었고, 따라서 죽어서 입안을 발급받게 되면 신분이 미천한 자들과 같다고 여기는 풍토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별개로 입안을 변통하여 종친 우대를 요청한 것은 이 무렵 종친 역시 물고입안 대상자였음을 보여준다.

이상 검시는 외방에서 죽은 죄인, 관직자와 같이 죽음의 원인이 불명확할

32 『英祖實錄』 31년(1755) 5월 21일.
33 『備邊司謄錄』 肅宗 3년(1677) 4월.
34 『備邊司謄錄』 肅宗 3년(1677) 4월 6일.

때 실인(實因)을 밝히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상의 기록 중 관직자의 경우 검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어도 물고입안의 발급과는 관련성이 다소 떨어졌다. 물고입안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검시가 분명 선제되어야 함은 사실이나 물고입안의 발급은 특정 역과 관련이 높았다. 서창령 이경빈이 든 예와 같이 군역을 들 수 있는데, 신역(身役)이 부과된 인정(人丁)이 죽을 경우 검시 대상이면서 물고입안이 발급되었다. 특히 이경빈의 경우 종친이나 『선원속보(璿源續譜)』에 귀원군(龜原君) 조(朓)의 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더욱이 어머니를 포함한 외가가 천첩자 소생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형제의 품계가 도정(都正)임에 비해 경빈은 령(令)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검시자들이 물고입안의 발급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군역의 의무가 없었던 관직자 원계검과 노모는 사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시가 제안되었으나 결과론적으로 검시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이경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왕실의 혈연관계 집단으로 이루어진 병종 족친위(族親衛)도 군역의 일종인 만큼 물고입안의 발급 대상자였다. 이는 조선 초기 양인개병제의 원칙이 의식적으로 남아 있었음을 의미할 것이며 물고입안의 발급과 군역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일 것이다.

군역을 포함한 신역은 물고입안의 발급과 상당히 관련 있었다. 1674년(현종 15)에 군사 및 각사(各司)의 노비와 장인들 중 죽은 자의 신역 면제와 관련하여 경기감사 이관징(李觀徵)은 신해년(1671, 현종 12) 이전에 죽은 자의 신역을 면제해 주라는 분부가 있었으나 일가붙이가 없어서 물고입안을 받지 못하거나, 일가붙이가 있더라도 사방으로 흩어져 즉시 알리지 못해 입안을 성급받지 못한 자가 있는 현실을 진달(陳達)했다.[35] 사망 이후 시친의 물고입안 발급 신청이 늦어진다면 여건상 시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사목만

35 『顯宗實錄』 15년(1674) 1월 4일.

을 준수하여 장자(狀者)의 요청이후 시체를 확인하고 검시한 뒤 물고입안이 발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입안이 발급되기까지 기다리기만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인족(隣族)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관징은 변통하는 방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의정 김수흥은 물고입안의 발급을 허락한다면 허실(虛實)이 뒤섞여 허위 사실을 막기 어렵고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족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관징의 말에 부분 동의했다.[36] 병조판서 김만기는 도망갔거나 죽은 군사에 대해 타인으로 대정(代定)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거짓으로 물고입안을 발급받는 폐단을 막을 수가 없다고 보았다. 여러 의견을 종합한 현종은 사망한 자들은 다시 조사해서 변통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논의는 죽은 군보(軍保)의 물고입안이 곧 신포(身布)의 감제(減除)와 관련되어서다. 도망과 죽음 등의 이유로 원활한 수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야만 인징(隣徵)의 폐단이 없을 수 있었다. 인징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사망을 증빙해 줄 수 있는 물고입안의 발급이었다. 그러나 물고입안의 특성을 악용하여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척 역에서 면제되기를 도모하는 이들이 존재하기도 했다.[37] 한편 실제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입안을 발급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질지[作紙] 값이 부담되어 입안을 성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38]

이처럼 물고입안은 양가적인 성격을 보인다. 죄인이 물고하거나 사체 훼손, 죽음의 타살 여부를 가려 범죄에 기인했는지 조사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경우, 또 다른 특성으로는 군역과의 관련성이다. 따라서 종친도 번포 관련하여 물고입안의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유배된 죄인뿐 아

---

36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뒤에서 살펴볼 물고입안의 폐단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꾸며 물고입안을 발급받음으로써 역을 면제받는 경우다.

37 『肅宗實錄』 35년(1709) 1월 7일.

38 『肅宗實錄』 37년(1711) 12월 26일.

니라 외방에서 살인이 나면 반드시 검시하도록 했는데[39] 후대에는 군보(軍保) 중에 집에서 죽은 자라 할지라도 검시를 받고 입안을 받도록 했다.[40] 기존 통념과 달리 공천만이 검시 대상은 아니었다. 법전에 규정된 양천(良賤) 모두 해당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벼슬을 지낸 양반은 검시를 꺼려하는 풍조가 있었고 유배된 죄인, 수취와 관련된 양인, 그중에서도 군사 및 국가에 소속된 공천을 대상으로 주로 검시가 이루어졌고, 특히 죽음을 증빙함으로써 역을 면제받기 위해 물고입안의 발급이 이루어졌다. 검시와 물고입안의 발급이 국가 운영 및 장악력의 일환 속에서 행해진 것이다.

3. 검시 절차 및 비용과 각종 폐단

물고입안의 발급은 호포(戶布)·정포(丁布)와 긴밀했다. 절차상 죽은 군병(軍兵)의 친족이 물고입안을 발급받은 후에야 대정(代定)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대정하기 전에는 비록 죽었더라도 그대로 베를 거두어 들였는데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의 폐단이다. 이처럼 죽은 뒤에 신속히 입안을 발급받아 원활한 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물고입안의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에 기인했다.[41] 물고입안이 성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자의 족속(族屬)이 정장(呈狀)해야 했다. 그리고 설사 입안 발급이 성공하더라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다. 따라서 가난한 친족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입안 발급의 시일만 늦춰지게 되었다. 이를 악용하여 부유한 백성들은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꾸미고, 관리 및 삼절린(三切隣)과 결탁해 물고입안의 발급을 도모했다.

---

39 『中宗實錄』 7년(1512) 2월 21일.

40 『顯宗改修實錄』 12년(1671) 11월 30일.

41 『肅宗實錄』 37년(1711) 9월 24일.

이 모든 일은 처음에 사망자의 죽음을 신고 할 책임과 주체가 개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판중추 이유(李濡)는 물고입안의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시친이 정장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본리(本里)의 유사(有司)가 물고하는 사람이 있는 대로 수본(手本)을 면(面)의 풍약(風約)에게 보고하자고 했다. 그럼 풍약이 현장으로 가서 간심(看審)하여 정말 물고했는지 확인한 뒤에 연명(聯名)해 본관(本官)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유사의 수본도 점련하여 올려 사망의 신실 및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유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구제(舊制)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42] 이외 입안이 발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인 질지[作紙]를 납부해야 했다.[43] 물고입안 또한 여타 입안들처럼 법전에 규정된 값보다 남용하여 징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물고자의 시친이 정채(情債)와 질지의 비용에 구애받아 입안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기사에서 확인된다.[44]

비변사에서 만들어진 양역 변통 절목에는 ① 하리(下吏)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관에서 받는 질지를 면제, ③ 만약 시친이 바로 관에 고하지 않으면 마을 임장(任掌)이 치고(馳告)하여 검시하도록 했다. 큰 틀에서 옛 제도를 유지하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 이유의 건의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듯 공식적인 질지 외에도 서리가 요구하는 뇌물도 물고입안의 발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45] 살림살이가 보잘것없어 뇌물을 줄 수 없었고, 오래도록 입안을 발급받지 못하자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점이 백골징포의 배경이었다. 이에 통주가 이정(里正)에게 고하고, 이정이 부

---

42 시친이 즉시 관에 고하고 수령이 직접 검시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갑자기 옛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43 『續大典』 刑典 決訟該用紙條.

44 『肅宗實錄』 37년(1711) 12월 26일.

45 『承政院日記』 肅宗 3년(1677) 8월 3일.

윤에게 보고하며, 부윤이 도윤에게 전보(傳報)하게 한다면 부윤과 도윤이 알지 못할 물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숙종은 이를 윤허했으나 고질적인 폐단은 고쳐나가기 어려웠다.

16세기 사회상이 담긴『묵재일기(默齋日記)』에서 이미 검시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수령에게 청탁하여 물고입안을 발급받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문건은 숙강(叔强)의 부탁을 받아 그의 기첩(妓妾)을 대신한 비(婢)의 물고입안 발급이 가능한지 목사에게 물었다. 목사는 공증(公證)이 없어서 입안을 성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물고입안의 발급을 위해서는 삼절린(三切隣)의 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 절차가 누락되어 입안 발급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틀 뒤에 목사는 숙강의 첩을 대신한 비의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숙강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이미 1488년(성종 19) 기사에서도 보이는데, 사대부가 고을의 기녀(妓女)를 첩으로 삼아 집에 데리고 살면서 자기의 여종 중 기녀와 나이가 비슷한 자기 비를 속신(贖身)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즉, 대구속신(代口贖身) 해놓고 관리에게 청탁하여 그 여종은 물고한 것으로 꾸며 입안을 받고, 이후 몰래 다시 여종을 환역(還役)하는 문제가 조선 초기부터 거론된 것이다.[46] 이처럼 이미 이전부터 숙강의 사례는 인지되어 온 문제였으나 여전히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문건이 살아가던 1549년(명종 4)에도 변방 지역인 양계의 수령, 첨사, 만호, 훈도 및 왕래하는 사람들이 기녀를 첩으로 삼거나 자신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속신한 후 데리고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47]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문건은 자신에게 물고입안을 부탁하

46 『成宗實錄』 19년(1488) 7월 24일.

47 『明宗實錄』 4년(1549) 12월 14일.

표2-『묵재일기』의 물고입안 청탁 사례

날짜	내용
1551년 8월 22일	목사에게 편지로 叔强의 첩 대신 婢를 물고입안해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公證이 없어서 입안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1551년 8월 24일	목사가 叔强의 妓妾을 대신한 婢를 물고입안했다고 한다.
1551년 8월 25일	이른 아침 業山의 어미가 와서, 어제 딸 대신 비가 죽은 사실에 대한 입안을 받았다며 감사했다. 목사가 홍주 사람에게 명하기를, "某宅 李文楗을 지칭함에서도 편지를 보낸 까닭에 특별히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하기에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1555년 3월 2일	子公을 시켜 別監 李格에게 普明의 족인 물고입안을 속히 내어주는 일을 청했다
1557년 12월 2일	金引之의 아내가 편지로 아들 宗建이 역병으로 죽었다면서 물고입안을 내줄 것을 청해 달라고 한다.
1557년 12월 7일	金世紹의 처 朴氏가 답장에 이르기를, "아들의 물고입안은 戶主가 맡아서 할 일이니 다시 청하지 않겠습니다. …."
1558년 3월 24일	性輪이 종이와 김치를 보내면서, 그 형이 사망[物故] 했다는 문서를 내줄 것을 청했다. 색리에게 물었더니 검시한 보고서[手本]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1559년 1월 19일	安峯寺 僧이 와서 알리기를, "병든 승 性輪이 어제 저문 후에 죽었습니다. 黃澗 사는 일족이 와서 化主의 일을 독촉하니 物故狀을 내어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내가 곧 편지로 죽었다는 것을 써서 보내며 전하도록 했다.
1559년 2월 1일	江華 댁의 妾子 安玢이 와서 말하기를, "吏曹의 代奴가 蘆長谷으로 도망 왔는데, 物故狀을 내도록 힘써 주십시오."라고 하고, 다시 성주 관아로 들어갔다.
1559년 2월 4일	信守가 와서 性輪의 物故狀을 내어 黃澗에 보내고자 한다기에, 내가 所志를 써서 주었다.
1562년 3월 16일	權豫孫이 와서 그 아들의 물고입안을 내줄 것을 청하고, 또 다른 일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는 사람들의 요청을 잘 받아 주었기에, 그에게 물고입안을 부탁하는 이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지각색이었다. 업산(業山)의 어미, 김인지(金引之), 김세소(金世紹)의 아내, 첩자(妾子) 안분(安玢) 같은 여인들과 승려 성륜(性輪), 신수(信守), 권예손(權豫孫) 같은 남성들도 있었다. 부탁이 빗발쳤던 것은 이문건이 보내주는 청탁 편지가 효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문건의 편지

덕택에 특별히 물고입안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해 하는 업산 어미의 사례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48]

이문건은 물고입안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직접 편지를 쓰는 한편 아는 사람을 통해 부탁을 해 주기도 했다. 1557년(명종 12)에 자공(子公)을 통해 별감(別監) 이격(李格)에게 물고입안을 요청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때로는 사망 사실을 알리는 소지(所志)를 직접 써 주거나 실무 책임자인 색리(色吏)에게 발급의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1558년(명종 13) 3월 24일 일기의 내용 중에 색리는 검시한 수본이 있다면 물고입안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물고입안의 발급의 조건은 삼절린의 공증, 검시 수본이 선결되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속신할 때 수령과 짜서 대납(代納)이라고 명분하면서도 대납하지도 않거나 죽은 것처럼 꾸며 물고입안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물고입안을 허위로 발급받는 현상은 변방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수령이 직접 검시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공증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고 검시 수본이 없었다. 1551년(명종 6)에 이문건은 죽은 초계(草溪) 사람을 검시하지 않아 사헌부로터 추고(推考)를 당한 목사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검시를 하지 않아 파직당하거나 죄를 받는 관리, 색리, 유사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사망의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데에 책임소지가 있었다.[49]

그러나 이후에도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꾸미며 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계속되었다. 이에 공천 중에 죽은 자는 정부(政府),

---

48 직접적인 청탁은 아니나 張孟南은 이문건에게 와서 자신의 아우가 죽었는데 입안을 내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물고입안 발급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李貴, 『默齋日記』 1553년 2월 10일.

49 『宣祖實錄』 14년(1581) 12월 17일.

삼사(三司)부터 외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검시하도록 하는 처분이 있었다.[50]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물고입안을 성급한 현감과 훈련별대 등이 존재했고, 이들은 장 80대에 수속(收贖)하고, 탈고신 3등의 과죄(科罪)를 받았다.[51] 거짓으로 물고입안이 발급될 때의 뇌물 규모는 명확하지 않으나 붉은 빛이 많이 나는 숫말 1마리를 병방(兵房)에게 준 기록이 남아 있다.[52]

물고입안이 발급될 때 소요되는 부비(浮費)의 부담으로 인해 발급이 미루어지기도 했다.[53] 이는 곧 군역과 관계되어 해당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죽은 자의 집안에서는 물고입안을 출급받기 위해 감영, 병영의 영리와 병조 서리에게 뇌물을 납부해야만 했다. 뇌물을 마련하기 힘들어 발급이 지연되면 백년이 지나도록 포(布)를 징수당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54] 따라서 가짜 인신(印信)을 만들어 위조하는 이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위조 인신을 가지고 물고입안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55] 이처럼 당시 만들어진 위조문권 중에 물고입안이 있었음을 통해 수요층을 확인할 수 있다.

1743년(영조 19)에 고(故) 우정량(禹廷良)의 아내 신 조이[申召史]가 승려 정신(定信)에게 방매한 토지매매명문에서는 물고입안의 발급 비용과 각종 정채(情債) 및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방매한 상황이 잘 남아 있다.[56] 신 조이의 남편이 정병(正兵)으로 복역하다 사망한 뒤 물고채

---

50 『顯宗改修實錄』 4년(1663) 8월 15일; 『特敎定式』 檢物故奴婢.

51 『承政院日記』 肅宗 7년(1681) 3월 28일.

52 『承政院日記』 肅宗 17년(1691) 7월 19일.

53 1725년(영조 1)에 어떤 사람의 친족이 수군의 보인으로서 죽은 지 한 해가 지났음에도 물고입안 작성에 쓰는 인정을 마련하지 못해 草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軍案에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기재된 사례가 있다. 『承政院日記』 英祖 1년(1725) 1월 11일.

54 『承政院日記』 英祖 1년(1725) 3월 11일.

55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5) 12월 1일;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5) 12월 16일.

56 권수용·문현주·최영희(역),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 문서 1』(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物故債), 정채, 관판(棺板) 등 초상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시댁 식구와 상의하여 3두락지의 토지(부수는 12부 4속)를 전문(錢文) 27냥에 팔았다. 군역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다고 즉시 역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겨진 가족들이 관에 납부해야 하는 조목이 있었고, 이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파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법전에도 검시 이후 시친에게 물고입안을 1건씩 발급되도록 했으나 현전하는 물고입안의 수량이 매우 소량이다. 물고입안을 가지고 있어야 죽은 자의 역을 면제받거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충정이 가능했으므로 발부가 필요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죽은 악공의 역이 지속되고 있자 악공의 일족들은 소지하고 있던 물고입안을 장악원에 바쳤다.[57] 이러한 물고입안의 활용 사례는 이 입안이 작성되고 발급되는 명확한 목적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악공을 포함하여 (유배)죄인, 종친, 사족, 공천까지도 검시 이후 물고입안 발급 대상이었다. 즉, 『경국대전』에 규정된 양인과 천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였다. 이들에게 부과된 신역(身役)이 있었기 때문인데 법문(法文)과 구별되는 사회적인 신분과 우대 속에서 물고입안이 제대로 발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는 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물고입안의 범용적인 발급이 어려웠다. 연대기 사료에서도 현실적으로 빈한한 군졸이 죽은 뒤에 남은 처자는 미약해지고 재산도 궁핍하여 즉시 관가에 보고하지 못해 생긴 폐단이 많이 발견된다. 관청에서도 즉시 검시하지 못해 입안이 지체되었고, 그만큼 죽은 자를 대신할 날이 없어 이웃과 일족에게 징수가 그치지 않았다.[58] 물고입안 발급이 늦어져 관의 장

57 『承政院日記』 仁祖 24년(1646) 12월 4일.

58 『備邊司謄錄』 肅宗 3년(1677) 10월 4일.

부는 헛 장부였으며 폐단이 백성들에게 미쳤다. 여타 입안처럼 물고입안 발급에도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지체가 되었던 것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사망하거나 노령으로 역이 면제되어 입안이 발급될 때는 질지를 무명으로 환산하여 내도록 했다. 이때 보충대(補充隊)로 내는 돈은 2냥이며 입안을 만들어 줄 때에는 1명당 돈 1냥씩을 낸다고 했다.[59] 질지가 외에도 물고입안이 성급되기 위해서는 검시가 선제되어야 했는데 검시 때 드는 대략적인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 갑오년 2월일 복검(覆檢)할 때 지공기(支供記)
> 8상(床): 관가에서 진지를 올림. 24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 24상: 형리 3인이 밥을 먹음. 24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 6상: 1인이 밥을 먹음. 24일 저녁부터 26일 오후까지
> 8기(器): 통인 1인 밥을 먹음. 24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 16상: 사령 2명이 밥을 먹음. 24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 2상: 1명이 밥을 먹음. 24일 저녁부터 25일 아침까지
> 8상: 급창 1인이 밥을 먹음. 24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 합해 82상
> 교군(轎軍)과 마필이 실어 나른 비용[駄價]은 임피에서 조처하여 준비
> 복검관(押)[60]

위 자료는 복검할 때 참여자들에게 음식물과 운송비를 이바지한 기록이다. 최다 제공된 식사 횟수가 24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8끼가 제공된 것

---

59 『大典會通』 刑典 公賤條.

6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覆檢官題音, 208913-12.

으로 미루어 복검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던 듯하다. 식사를 제공 받은 이들 중에는 형리, 통인, 사령, 급창처럼 분명히 수급자가 명기된 이들도 있다. 다만 첫 번째 8상을 받은 인물은 미지수이나 관가에서 진지를 올렸다는 표현으로 보아 복검관에 해당하는 듯하다.

이외에도 신분을 알 수 없는 6상을 받은 1인과 2상을 받은 1인도 있었다. 이렇게 10명이 식사를 제공받았고 총 82상이 제공되었다. 식사뿐만 아니라 교군과 마필의 비용이 지출된 것은 인근 지방 수령의 복검관이 정시처로 오는 비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비용은 임피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아 검시 대상지가 전라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물고입안이 발급되기 이전 단계인 검시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비용 또한 상당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급은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물고입안은 어떤 형태로 발급되었는지 살펴보겠다.

Ⅲ. 현전하는 물고입안의 내용과 특성

1646년(인조 24)에 악공의 일족이 물고입안을 현납(現納)한 일화를 통해 군역 외 일정 직역을 수행하는 이들은 사망 이후 부여받은 역의 면제를 위해 물고입안이 필요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특정 직역의 소유자들에게 발급된 물고입안이 전래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실물 물고입안에 대해 발굴되고 소개된 적은 없다. 다만 최근에 자료를 찾던 중 시친자(屍親者)에게 발급된 물고입안을 발견했다. 총 6건으로 4건이 노비의 사망 이후 발급됐으며, 2건은 정병의 사망 이후에 발급된 물고입안이었다. 물고입안을 발급받은 노비 중 1건이 관노였고 3건이 서원노비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 작게는 관노비와 서원노비로 분류하여 노비의 물고입안을 살펴볼 것이고, 크게는 노비와

정병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고입안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조정에서 논의된 각종 사항들이 실제 발급될 때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노비 물고입안

현전하는 물고입안은 총 6건으로 17세기 초반 관노 및 서원의 노비, 정병의 사망에 대한 증명이 주 내용이다. 이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입안은 1603년(선조 36) 제천관에서 발급되었으며 7개의 낱장 문서가 점련된 형태이다. 특히 이 물고입안은 대구속신(代口贖身)의 사례로서 대노(代奴)가 사망할 경우 속신한 대상자 쪽에서 물고입안을 신청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죽은 자의 친족이 물고입안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과 상이하다. 추정이나 다른 노비를 대신 세우고 속량한 측에서 물고입안을 신청한 배경은 대노자에게 별도 가족이 없어서라기보다 죽은 노가 대체된 노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61] 이는 공천(公賤)의 감소와 관계될 뿐 아니라 부정하게 속신한 뒤 대노비(代奴婢)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꾸며 입안을 받는 자들이 존재했던 점도 주요한 배경이었을 것이다.[62] 즉 노(奴)는 노(奴)로, 비(婢)는 비(婢)로 대신 세웠음의 분명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과 이후 법규지만 『속대전(續大典)』의 "속신한 뒤 10년 이내에 대납(代納)한 노비가 죽었을 경우 속신시켰던 자를 환천(還賤)시킨다."는 조목과도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63]

---

61 특히 1603년 제천관 물고입안을 살펴보면 죽은 막산의 屍親인 蒙福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장을 대신해 줄 시친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노였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62 『中宗實錄』 38년(1543) 7월 14일.

63 『續大典』에 公賤을 다른 노비를 대신 세우고 속량한 경우에는 대체하는 노비의 호적을 조사하되 여러 式年의 것을 살펴보아 이름이 확실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나이가

표3-실물 물고입안의 현황

연번	문서명	내용	소장처
1	1603년 제천관 물고입안	관노 義福의 代奴 莫山의 사망에 대한 입안	제천의병전시관
2	1635년 예안관 물고입안	도산서원 奴 仇知 등의 사망에 대한 입안	한국국학진흥원
3	1635년 예안관 물고입안	도산서원 奴 禿同 등의 사망에 대한 입안	한국국학진흥원
4	1635년 예안관 물고입안	역동서원 婢 今月의 사망에 대한 입안	한국국학진흥원
5	1827년 칠곡현 물고입안	정병 朴春植의 사망에 대한 입안	서울역사박물관
6	1872년 곡성현 물고입안	정병 李多男의 사망에 대한 입안	서울역사박물관

막산(莫山)이 대노된 시점과 죽은 시점의 간격은 자료가 소략하여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노자의 죽음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카를 대신하여 삼촌인 의복(義福)이 정소(呈訴)했던 것이다. 물고입안이 발급되는 과정을 문서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① 물고입안의 발급을 요청하는 소지, ② 오작인(仵作人) 초사, ③ 시친의 초사, ④ 수노(首奴)의 초사, ⑤ 절린과 이정, 감고(監考)의 초사, ⑥ 호장(戶長), 이방(吏房), 장교(將校)와 색리, 의생(醫生), 율생(律生)의 초사, ⑦ 모든 진술을 종합한 제천관에서 발급해 준 물고입안 순이다. 형태적으로 물고입안을 살펴보면 점련형 결송입안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64] 양측의 문서군은 모두 "소지-피고 및 관련자 초사-관의 최종판결에 해당하는 입안"의 문서가 점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견 형태적으로 물고입안이 사급입안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서로 엇비슷한 자로서 인원수를 계산하여 남종은 남종으로, 여종은 여종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후대의 법규지만 제천관의 노 몽압이 속신할 때도 이 규정과 같이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노로 대노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續大典』 刑典 贖良條.

64 점련현 결송입안이란 결송입안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형태상으로는 낱장의 문서가 점련되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관에서 중심이 되어 발급에 필수적인 문서만을 선정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이다. 권이선, 「조선시대 決訟立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 『고문서연구』 5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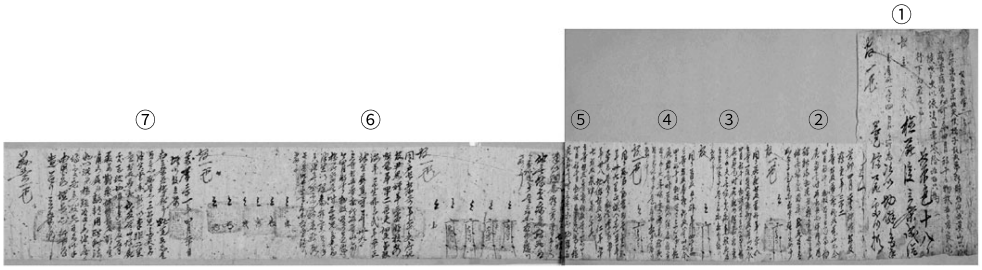

그림1-1603년 제천관 물고입안(제천의병전시관).

사급입안은 "소지-해당 매매명문-관련자 초사-입안" 순으로 중간에 매매명문인 사인(私人)문서가 점련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물고입안과 점련형 결송입안은 장자(狀者)의 소지를 제외하고 모두 관에서 중심이 되어 생산한 문서로 점련되었다. 즉, 물고입안의 발급은 사급입안에 비해 관에서 모든 과정을 관리했고, 단계별 주체 역시 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례로 물고입안의 발급을 요청하는 소지를 중심으로 1명의 관노 사망에만 14명의 진술이 바탕이 되어 물고입안이 발급되었다. 관노의 사망에 대해 입안이 성급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가 있었던 것인데, 이를 각각의 문서를 살펴봄으로써 연대기 사료와 문집에서 보이던 물고입안의 실체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럼 제천관 물고입안에 기록된 사망자 막산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진술자들은 무엇을 증명했을지 알아보겠다.

이 물고입안의 발급은 관노 막산의 죽음 때문에 시작되었다. 막산이 죽은 이유는 병 때문이었다. 소지의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고 내용이 간략하여 언제 의복이 이 소지를 작성했는지, 막산이 얼마나 병을 앓다 죽었는지 불명확하다. 다만 의복은 막산의 사망일자를 4월 10일로 밝혔다. 또한 제사(題辭)

65 "官奴 義福[左寸]右所陳爲白內等奴矣段 姪子官奴夢押贖身代奴莫山亦 得病苦痛爲白如可 今四

표4-① 관노 의복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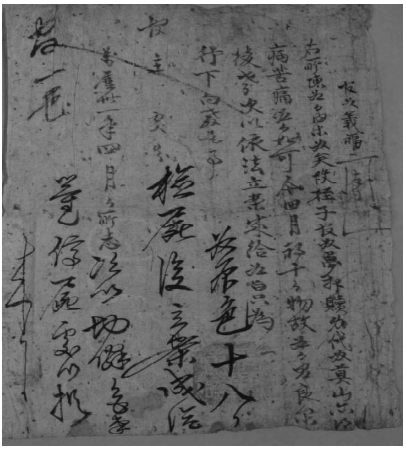

관노 義福[左寸]
奴인 제가 삼가 아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카인 관노 夢押을 대신하여 세운 노 莫山이 병을 얻어 고통스러워 하다가 금년 4월 초10일에 物故하였으니 뒷날 고찰하기 위해 법에 의거하여 입안을 성급해 주십시오. 官主께서 처분하여 명령하실 일입니다.
만력 31년(1603) 4월 일 소지

[제사]
檢屍 후에 입안을 성급하기 위해 절린, 색장 등을 停屍處로 잡아올 일
奴婢色에게. 18일[65]

가 쓰이고 제천관의 노비색(奴婢色)을 담당자로 지정한 날짜가 18일이다. 따라서 10일에 막산이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복이 소지를 작성했던 것이다.[66] 정소자(呈訴者) 의복이 입안 신청을 요청한 행위는 법에 의거한 것이다. 해당 법문은 다음과 같다.

月初十日 物故爲白有良尒 後考次 以依法立案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官主處分. 萬曆卅一年 四月日 所志 [제사]檢屍後 立案成給次 以切隣色掌等乙 停屍處以捉來事. 奴婢色 十八日".

66 『經國大典』 兵典 免役條에 군사로서 사망한 사람, 도망한 사람, 늙어서 역이 면제된 사람은 연초와 연말을 물론하고 즉시 대신 충정하도록 하면서 사망한 사람의 입안을 3개월이 지나도록 작성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은 파직하고, 색리는 엄히 형장을 친다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도 이와 유사한 조문이 있다. 각 고을의 공천이 노령으로 役이 면제되거나 사망하면 장례원에 보고하고 立案을 작성해서 보내어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석 달이 넘도록 입안을 작성해 주지 않은 수령은 파직한다고 했다. 군사에 비해 색리의 처벌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공천의 경우도 늦어도 3달 이내에 입안 발급을 규정화했다. 따라서 의복은 막산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물고입안 신청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린 것이다.

◯ 공천이 사망한 경우, 서울에서는 본래 소속된 관사 및 거주지인 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직접 가서 시신을 살펴보고 소관인(所管人)과 일족 및 절린 등의 공초(供招)를 받아서 입안을 작성하여 형조·본래 소속된 관사·본도(本道)·본읍(本邑)에 각각 1건씩 보관하며, 죽은 공천의 친족에게도 1건을 주어서 훗날 참고할 때 증빙으로 삼는다. 해당 아전이나 일족 등이 실정을 알고도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경우에는 사면령이 내려졌느냐의 여부를 막론하고 전가사변(全家徙邊)에 처한다. 관리는 제서유위률(制書有違律)로 논죄한다.[67]

의복이 근거한 법은 『경국대전』의 공천조(公賤條)이다. 당시 의복은 지방에 거주했기 때문에 제천관에 입안을 신청했다.[68] 법문에 현감이 직접 살펴본 뒤에 소관인(所管人)과 일족 및 죽은 자의 거주지로부터 양 옆집, 뒷집에 거주하는 절린들에게 초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현감은 검시 후에 여기에 참여한 절린과 색장을 시체가 안치된 정시처(停屍處)로 잡아오도록 했다. 물고입안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검시가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담당 관원이 직접 검시했는지 여부다. 우선 해당 사건은 법문에 의거하여 제천관의 수령이 직접 검시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제사의 처분에서 보이듯 검시 이후에 절린과 색장 등을 정시처로 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초 시점을 검시 후로 한 것은 공초 대상자들이 검시에 참석한 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검시 현장에서 담당한 역할과 본 바를 추문(推問)했다. 문서로는 ②부터 ⑥까지로 공통적으로 "대노 막산이 금년 4월 10일에 물고했고 당일 검시하실 때에 각각의 참여자들이 따라 참여하여 자

67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

68 당시 제천현감은 李應曄으로 추정된다. 이응엽은 1599년(선조 32)에 제천현감에 제수받았다. 『宣祖實錄』 32년(1599) 6월 11일.

표5-②~⑥ 진술인 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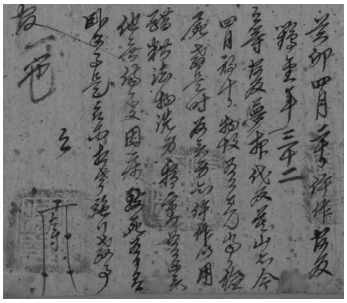

② 仵作人 官奴 鶴金 초사
계묘년 4월 20일
오작 관노 鶴金 나이 32 아뢴기를 관노 몽압이 대노한 막산이 금년 4월 초10일에 물고하였거늘 당일 검시하실 때에 노인 제가 오작으로 醋糟와 法物을 사용하여 시신을 씻겨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달리 상처가 없어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아룀[좌촌]
관[압][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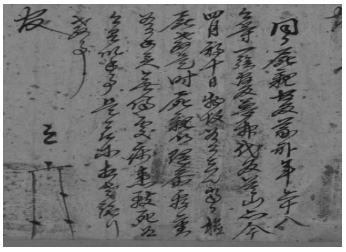

③ 屍親 官奴 蒙福 초사
같은 날 시친 관노 몽복 나이 68 아뢰기를 일족으로 관노 몽압이 대노한 막산이 금년 4월 초10일에 물고하였거늘 당일 검시하실 때에 시친으로 따라 참여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달리 상처가 없어 병환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아룀[좌촌]
관[압][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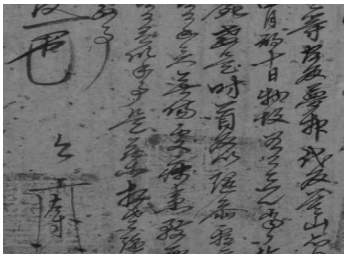

④ 首奴 五十福 초사
같은 날 수노 오십복 나이 43 아뢰기를 관노 몽압이 대노한 막산이 금년 4월 초10일에 물고하였거늘 당일 검시하실 때에 수노로서 따라 참여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달리 상처가 없어 병환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아룀[좌촌]
관[압][71]

---

69 "癸卯四月二十日 仵作官奴鶴金年三十二白等 官奴夢押代奴莫山亦 今四月初十日 物故爲白去乙 當日檢屍敎是時 奴矣身亦仵作以 用醋糟法物 洗身看審爲白乎矣 他無傷處 因病致死爲白有臥乎事是良尒 相考施行敎事. 白[左寸]. 官[押]".

70 "同日屍親官奴蒙福年六十八白等 一族官奴夢押代奴莫山亦 今四月初十日 物故爲白去乙 當日檢屍敎是時 屍親以 隨參看審爲白乎矣 無傷處病患致死爲白有臥乎事是良尒 相考施行敎事. 白[左寸]. 官[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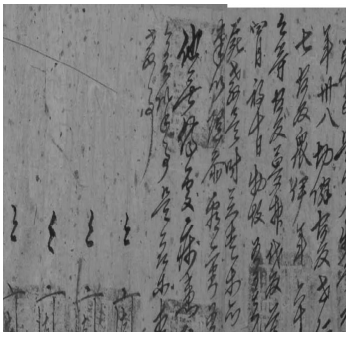

⑤ 切隣과 色掌 등의 초사
같은 날 노 右勸農 보병 김일복 나이 39, 이정 보인 변일남 나이 55, 감고 보병 이영희 나이 38, 절린 관노 세인 나이 67, 관노 중이 나이 69 아뢰기를 관노 몽압이 대노한 막산이 금년 4월 초10일에 물고하였거늘 당일 검시하실 때에 저희들이 절린·색장으로 따라 참여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달리 상처가 없어 병환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할 수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아룀[좌촌]
아룀[좌촌]
아룀[좌촌]
아룀[좌촌]
아룀[좌촌]
관[압][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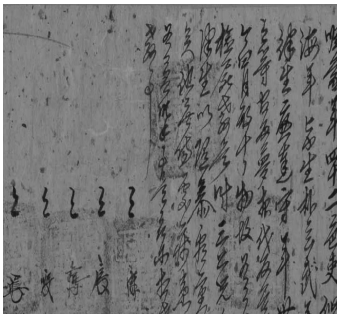

⑥ 三公兄, 色吏, 律生 등의 초사
같은 날 호장 안중기 나이 60, 이방 기관 윤사례 나이 34, 장교 안순몽 나이 42, 색리 가리 김은해 나이, 율생 염봉수 나이 39 아뢰기를 관노 몽압이 대노한 막산이 금년 4월 초10일에 물고하였거늘 당일 검시하실 때에 삼공형·색리·율생으로 따라 참여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달리 상처가 없어 병환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할 수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아룀[좌촌]
아룀[좌촌]
아룀[좌촌]
아룀[좌촌]
관[압][73]

---

71 "同日首奴五十福年四十三白等 官奴夢押代奴莫山亦 今四月初十日 物故爲白去乙 當日檢屍敎是時 首奴以 隨參看審爲白乎矣 無傷處病患致死爲白有臥乎事是良尒 相考施行敎事. 白[左寸]. 官[押]".

72 "同日奴右勸農步兵金一福年卅九 里正保人邊一男年五十五 監考步兵李永希年卅八 切隣官奴世仁年六十七 官奴衆伊年六十九白等 官奴夢押代奴莫山亦 今四月初十日 物故爲白去乙 當日檢屍敎是時 矣徒等亦 切隣色掌以 隨參看審爲白乎矣 無傷處病患致死爲白有臥乎事是良尒 相考施行敎事.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官[押]".

세히 살펴보니 시신에 달리 상처가 없어 병으로 인해 죽은 것 같다."고 아뢰는 부분이다. 참여자 중 시신에 입혀진 의복을 벗겨 내고 초조(醋糟)와 법물(法物)로 시신을 씻기는 역할을 담당한 오작인을 제외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진술 부분이 거의 흡사하다.

참여자들의 직역과 구성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폭넓은 인원을 대상으로 초사를 진행한 것은 물고자의 죽음과 사망 원인에 확실성과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각각의 초사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세 집단 간에 묶였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죽은 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직군이다. 죽은 막산의 일족인 몽복이 시친 대표로 들어왔고, 제천관의 수노 오십복도 참여하여 막산의 사망을 증빙해 주었는데 이들의 참여는 죽은 자가 막산임을 확인해 주는 요소였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거주하던 공간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이정과 절린이다. 지방 최말단 행정 단위의 이정이 초사에 참여한 것은 뒷날 이정이 부윤에게 보고하며 부윤이 도윤에게 전보하는 배경과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이정과 삼절린은 피역자(避役者)와 관련성이 높았다. 이정은 인구이동 현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삼절린은 수취 문제에 연대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마을의 운영과 역의 부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 물고자의 사망을 확인해 줌으로써 사망의 진정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 직군의 초사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 행정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삼공형과 『대명률(大明律)』·『무원록(無寃錄)』 같이 검시 관련

---

73 "同日戶長安仲奇年六十 吏房記官尹思禮年三十四 將校安順蒙年四十二 色吏假吏金銀海年 醫生朴玄武年五十三 律生廉逢守年卅九白等 官奴夢押代奴莫山亦 今四月初十日 物故爲白去乙 當日檢屍敎是時 三公兄色吏律生以 隨參看審爲白乎矣 他無傷處病患致死爲白有臥乎事是白去等 相考施行敎事.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官[押]".

율학을 공부하는 율생, 의학적 판단이 가능한 의생이 참여했다.[74] 특히 율생과 의생은 검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후대 기록이나 한성부에서 검시를 할 때 직접 검시하는 것을 꺼려하여 율생과 의생의 말만을 따르는 행태를 영조가 지적했다.[75] 이를 통해 전문 분야를 갖춘 율생과 의생이 검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천관 물고입안이 발급되었다. 기두어는 우입안위검시사(右立案爲檢屍事)로 이 입안의 발급 목적이 검시를 증명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초사에서 검시 이후 절차를 알 수 있다면 입안 부분은 검시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먼저 막산의 시체가 있던 정시처는 제천관에서 남쪽으

표6-1603년 제천관 물고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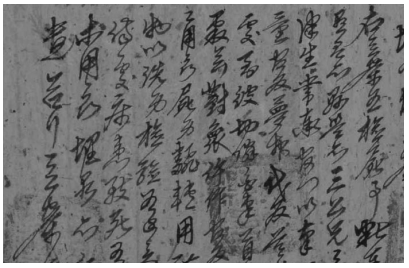

⑦ 제천관 물고입안
만력 31년 4월 20일 제천관 입안
이 입안은 검시하는 일이다. 점련된 소지라고 하였기에 현감이 삼공형·색리·의생·율생을 거느리고 官門에서 남쪽으로 2리쯤 떨어진 곳에 관노 몽압이 대노한 막산의 시체가 있는 停屍處로 가서 절린·색장·수노 등 모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작인 관노 학쇠로써 시신을 돌려가며 醋糟와 法物을 사용하여 시신을 씻겨 검시해 보아도 달리 상처가 없어 병환으로 죽음에 이른바 묻으라고 명령하고 이에 마땅히 입안함.
행 현감[압][76]

---

74 의생의 경우 지방 수령과 함께 직접 검시하기도 했다. 영조 대 기사이나 죄인의 사망에 부의 관원과 부의 아전, 의생이 검시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承政院日記』 英祖 5년(1729) 4월 8일.

75 『承政院日記』 英祖 6년(1730) 4월 1일.

76 "萬曆三十一年四月二十日堤川官立案. 右立案爲檢屍事 粘連所志是置有亦 縣監亦 三公兄色吏 醫律生帶率 官門以南距二里量 官奴夢押代奴莫山停屍處到彼 切隣色掌首奴等 聚會對衆 仵作官奴鶴金乙用良 屍身飜轉 用醋糟法物 以洗身檢驗爲乎矣 他無傷處 病患致死爲有臥乎等用良 埋置亦行下爲遣 合行立案者. 行縣監[押]".

로 2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현감은 실무자 직군인 삼공형, 색리, 의생, 율생을 거느리고 정시처로 향했다.

정시처에는 두 번째 직군인 절린, 색장과 첫 번째 직군의 사망자 신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검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오작인은 시신을 돌려 가며 초조와 법물을 사용하며 씻겨 타살의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시신을 둘러본 이후에 막산의 시체에서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제천관에서는 의복의 주장처럼 막산이 병 때문에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상 관노비 그중 대노로 관노비였던 한 노의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서원 노비가 죽을 시 물고입안 발급 과정을 알아보겠다.

2. 서원 노비 물고입안

서원 노비의 죽음에 대해 발급된 물고입안은 총 3건이 있다. 도산서원 노비의 사례로 2건, 역동서원으로 1건이다. 시기는 모두 1635년(인조 13)이다. 먼저 도산서원 영속노비 일가의 죽음은 병 때문이었다. 문서의 구성은 ① 물고입안 발급을 요청하는 소지, ② 색장, 이정, 절린의 초사, ③ 예안관 입안 순이다. 소지는 문서 결락이 심하여 작성자를 특정 짓기 어려우나 뒤이은 초사에서 색장, 이정, 절린의 구두진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초사 참여자는 사노 난수(難守)(당시 나이 50), 이정 노 천수(天守, 당시 나이 67), 절린 노 치복(당시 나이 60)이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도산서원 고직(庫直) 양복(良卜)이 소지를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양복의 소지에 의거하여 서원 노비 일가족의 물고 진위를 추고하기 위해 난수, 천수, 치복이 예안관 앞으로 모였다. 사망자는 3명으로 노 구지(仇知), 비 번금(番今), 비 막분(莫分)이었다. 관노 막산의 죽음에 비해 참여자가 현격히 적지만 이들은 절린

이자 관할 구역 내에 거생했던 관계였다.

사망자 가족은 지난 6월 20일 이후에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중 차도를 보이지 못하다가 노 구지가 먼저 7월 7일에, 향금은 7월 12일에, 막분은 7월 15일에 연달아 사망했다. 초사 참여자의 진술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장자(狀者)와 자신들 간에 그릇된 일에 결탁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산 사람을 죽었다고 만들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색리들과 도모하여 고의로 역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들 노비 가족이 죽은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77]

소지와 초사를 통해 예안관 현감은 도산서원의 영속노비 가족의 사망을 확인해 주었다. 이 입안에서 기두어는 '우입안위물고사(右立案爲物故事)'다. 1603년 제천관 입안의 기두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점의 차이였다. 두 문서 모두 '물고가 적실한지를 확인'해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만 주 기재 내용의 논점이 달랐다. 제천관 입안은 검시 과정에 집중하여 노의 죽음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예안관 입안에는 검시 과정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오직 언제 노비 가족이 병을 앓았고, 각각 며칠에 사망했는지 그들의 죽음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물고가 진실함을 표현했다.[78]

1635년 6월 즈음 안동 도산서원 인근에서는 전염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77 "乙亥七月十八日. 色掌私奴難守年五十 里正奴天守年六十七 切隣奴値卜年六十白等 節呈陶山書院庫直良卜名呈所志據 物故眞僞推考敎是臥乎在亦 陶山書院永屬奴仇知 婢香今 婢莫分等亦 矣徒切隣掌內 居生爲旀 同院使喚爲如乎 去六月卄日以後 合家時病以 苦痛爲如可 同病差息不得 奴仇知段 今七月初七日身死 婢香今段 十二日身死 婢莫分段 十五日亦爲身死 的只在果 狀者符同 以生爲死 虛事納段爲置如可 他條以 現發爲去等 矣徒等當推敎事 官(押). 白(手寸). 白(手寸). 白(手寸)".

78 "崇禎八年七月日 禮安官立案. 右立案爲物故事 連次所志據 連次所志據 切隣色掌等 進來推閱爲置 陶山書院 永屬奴仇知婢香今 婢莫分等亦 一家居生爲如乎 去六月卄日以後 合家時病以 苦痛爲如可 同病差息不得 奴仇知段 今七月初七日身死 婢香今段 十二日身死 婢莫分段 十五日亦爲身死的只乎等用良 以憑後考施行向事 合行立案者. 行縣監(押)".

된다. 노 구지 외 또 다른 영속노 독동(禿同)의 가족 또한 전염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독동 가족의 사망에 대해 훗날 고찰하기 위해 입지(立旨)를 신청한 정소자는 구지와 같은 소속의 서원 고직 양복이었다.[79] 구지처럼 비슷한 시기인 지난 6월 초에 병을 앓다가 독동은 6월 15일, 옥분은 6월 20일에 사망했다. 이에 현감은 7월 3일에 입안을 추열(推閱)하기 위해 절린과 색장을 동시에 나오게 하도록 제음을 처분했다. 곧 바로 7월 4일에 색장, 이정, 절린의 진술이 이어졌다. 소지와 초사를 바탕으로 예안관에서는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었다.[80]

다음은 역동서원의 영속노비 중 사망한 이들에 대한 물고입안이다. 역동서원에서도 물고입안의 신청을 요청한 담당자는 노 학손(鶴孫)으로 서원의 고직이나 수노(首奴)로 추정된다. 서원의 영속비 금월(今月)이 지난 6월부터 온 가족이 전염병을 앓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7월 10일에 금월이 죽었으니 절린, 색장 등을 추열한 뒤 다른 입안을 성급해 주듯이 금월의 물고입안 발급을 요청했다.[81]

14일 색장 사노 연룡(連龍, 당시 나이 50), 이정 노 종금(從金, 당시 나이 42), 절린 노 막동(莫同, 당시 나이 59)은 학손의 소지에 의거하여 금월의 사망이 진실인지 추고를 받았다. 금월은 영속 비자(婢子)로 위 세 사람이 공초를 받

---

79 "陶山書院庫直奴良卜. 右所陳爲白內等 書院永屬奴禿同 婢玉分等亦 去六月初生始叱 時病苦痛爲如可 禿同段 六月十五日身死 玉分段 同月卄日身死爲置去乎 後考次以 立旨成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官司主處分. 崇禎八年七月日所志. 官(押) (題音) 推閱立案次以 切隣色掌 一時來現向事. 初三日".

80 "崇禎八年七月日 禮安官立案. 右立案爲物故事 連次所志據 切隣色掌進來推閱爲置 上項奴禿同婢玉分等亦 陶山書院永屬奴婢以 同院使喚爲如乎 去六月初生始叱 時病苦痛爲如可 同病差息不得 奴禿同段 同月十五日身死 婢玉分段 同月卄日身死 的只乎等用良 以憑後考施行向事 合行立案者. 行顯監(押)".

81 "易東書院奴鶴孫. 右所陳爲白內等 書院永屬婢今月亦 去六月始叱 合家時病以苦痛爲如可 同病未差 七月初十日身死爲有去乎 物故眞僞乙良 切隣色掌等進來推閱 依他立案成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官司主處分. 崇禎八年七月日 所志. 官(押). (題音)推閱立案次以 切隣掌 一時來現向事 十三日".

게 된 것은 절린이자 색장으로 거생해서다. 이들은 금월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가 차도를 보이지 못한 끝에 7월 10일에 사망했다고 아뢰었다. 이들은 만약 산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으로 초사를 바쳤다가 적발되면 추문(推問)해 달라고 진술을 끝맺었다.[82]

소지와 초사에 의거하여 예안관에서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입안은 초사와 내용이 동일했다. 즉, 연차(連次) 된 소지에 의거하여 초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 틀림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예안관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83] 2건의 예안관 입안은 제천관 입안에 비해 검시 과정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분명 검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일 법규지만 공천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해당 고을의 검장(檢狀)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물고입안 발급을 위해서는 검시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84]

3. 정병 물고입안

정병의 물고입안은 관노비, 서원 노비의 물고입안에 비해 온전한 형태로 잘 남아 있지 못하다. 별개의 사망에 대한 물고입안 관련 소지와 초사, 입안이 각기 1건씩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문서들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세

---

82 "乙亥七月十四日. 色掌私奴連龍年五十 里正奴從金年四十二 切隣奴莫同年五十九白等 節呈易東書院奴鶴孫名呈所志據 物故眞僞推考敎是臥乎在亦 婢今月亦 易東書院永屬婢子以 矣徒切隣色掌內居生爲旀 同院使喚爲如乎 去六月始叱 合家時病以 苦痛爲如可 同病差息不得 今七月初十日物故的只在果 狀者符同 以生爲死 虛事納段爲有如可 他條以 現發爲去等 矣徒等 當推敎事. 官(押). 白(手寸). 白(手寸). 白(手寸)".

83 "崇禎八年七月日 禮安官立案. 右立案爲物故事 連次所志據 切隣色掌等 進來推閱爲置 易東書院永屬婢今月亦 去六月始叱 合家時病以苦痛爲如可 同病差息不得 今七月初十日物故的只置以憑後考施行向事 合行立案者. 行縣監(押)".

84 『大典通編』 刑典 公賤條.

계지도-중국역대 8폭 병풍을 보존처리 하는 과정 중에 발견되었다. 물고입안 관련 일괄 문서가 병풍틀용 종이로 사용된 것이다. 이중 물고입안 관련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827년(순조 27)에 곡성현 삼기면(三岐面)의 용계동장(龍界洞長) 박우득(朴又得)이 자신의 마을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백억발(白億發)이 병으로 죽었으니 대정(代定)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형방에게 '검험하라.'는 제사를 내려 주었다.[85] 이 소지 뒤로 관련자의 초사와 입안이 있지 않으나 물고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므로 관노, 서원노비의 물고입안과 같이 본래에는 초사와 입안이 점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휴지(休紙)로 사용됨에 따라 점련되어 있었을 문서가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 1827년 3월에 곡성현에서는 "점련된 과장에 근거하여 정병 이다남(李多男)이 사망하여 전례에 의거 여러 사람들이 검시를 했으므로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이 확실하므로 면의 이임, 절린에게 초사를 받은 후에 입안을 성급해 준다."며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었다.[86] 이 물고입안에 따르면 정병 이다남이 사망하자 검시를 거쳤고 여기에 면의 이임과 이웃에 사는 절린에게 초사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초사 부분이 결락되어 현재는 물고입안 부분만 전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또 다른 물고입안으로 정병 박춘식(朴春植)의 문서가 있다. 이 문서 또한 1827년(순조 27) 칠곡현에서 발급된 것으로 문서의 결락이 있어 물고입안 발급 소지와 초사 중 일부는 결락됐고, 현재는 이정 김

---

85 "三岐面 龍界洞長 朴又得. 右謹陳所志事段 矣身村居白億發 正兵之役擔當是如可 偶然得病 今月初八日 仍爲身死是乎等以 緣由仰訴 卽爲代定事 處分爲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丁亥正月日 檢驗向事 初九日 刑". 임주희·박성호·김신미, 「세계지도: 중국역대 8폭 병풍의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연구 8』(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1), 70쪽.

86 "道光七年三月日 谷城縣立案. 爲立案成給事 粘連課狀據 正兵李多男屍身 依例對衆行檢 則因病致死的實 故面里任切隣處 捧招後 立案成給者". 위의 논문.

칠몽(金七夢)의 초사와 칠곡현의 입안만 남아 있다. 이정 김칠몽은 정병 박춘식의 시체에 상처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고, 혹 문서를 꾸며 올렸거나 검시를 하지 않았다면 뒷날에 형벌을 받겠다고 했다.[87] 칠곡현에서는 점련된 과장(課狀)에 의거하여 현안(縣案)에 기록된 정병 박춘식의 시체를 여러 사람들이 검시한 결과 박춘식이 병으로 죽은 것이 분명하므로 면의 이임과 절린 등에게 초사를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해 준다고 했다.[88]

이상 현전하는 물고입안 중 결락없이 문서 전체가 잘 남아 있는 것은 제천군과 예안관 물고입안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물고입안의 사례는 초검(初檢) 단계에서 죽음에 관해 이의 사항이 없을 시 발급되는 사망증빙 문서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소개된 살인 사건 조사 과정과 지식이 담긴 『검고(檢考)』의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양상을 물고입안을 통해 이해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물고입안을 통해 검시보고서인 검안(檢案)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어 시친자의 친족에게 전해졌는지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물고입안의 발급은 죽은 이의 시신을 검시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실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죽은 이를 인증해 줌으로써 정당한 수취 구조 속에서 역을 감해 주었는지와 관련이 높았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시대 조정에서 신역의 면제와 관련하여 논의된 물고입안의 발급 대상자와 실제 문서 속에서 파악한 대상자는 관사 공노비, 서원 노비, 정병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공천과 정병은 각자가 속한 곳에서 응당 부과된 역들이 있었다. 이처럼 군역, 신역을 대상으로 물고입안의 발

87 "里正 金七夢年二十九. 監考. 前件正兵朴春植屍體傷損乙 增減施行爲白去 座事乙用良 造飾錄上爲白去乃 不直檢驗白有如可 後次現露令是白乎 弟亦中 檢驗官吏人 各各伏罪無事爲白乎事". 위의 논문.

88 "道光七年二月日 谷城縣立案. 右立案成給事 粘連課狀據 縣案付正兵朴春植屍身對衆■(行)檢則因病致死的實 故面里任切隣等取招後 立案成給者". 위의 논문.

급이 활발했던 것은 조세 체계, 특히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관(官)내지 국가에서 호(戶)의 구성원을 파악하던 중 죽음을 통해서만 각종 역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죽음을 통제함으로써 원활한 수취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증명하는 수단 중 하나가 물고입안이었다.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앞서 소개한 1603년, 1635년, 1827년 물고입안은 법전에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한 문서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아무개의 죽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부분을 통해 사망 확인서가 악용된 여지를 막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실제로 이후 공노비의 수와 이들에게 받는 공목(貢木)이 매우 줄어드는 요인으로 물고입안의 악용을 거론했다.[89]

예를 들어 전주 한 읍을 놓고 보자면 본안(本案)에 기록된 노비는 600여 명이었지만 1702년(숙종 28)에 실공(實貢)은 단지 5~6명에 불과했다. 장부상 기록과 실제 현실 사이의 극심한 차이는 굶주림과 돌림병 같은 재난을 고려하더라도 현격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토의된 내용을 보면 당시 각 읍에서 물고입안을 상송(相送)하는 곳들이 많아서였다. 즉, 여러 차례 지적되는 물고입안을 그릇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물고의 의미, 검시 대상자, 물고입안의 발급 절차와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단 등 조선시대 물고입안을 둘러싼 법제와 운용 현황을 살펴보았

89 『承政院日記』 肅宗 28년(1702) 7월 25일.

다. 또한 실제로 전래되고 있는 6건의 물고입안 구성과 내용을 분석했다. 조선 초기부터 검시 이후 시친자에게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도록 했으나 입안 발급 비용, 중간에 소요되는 뇌물 등의 이유로 발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물고입안에서 '물고'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망을 의미하는 어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고려시대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물고라는 어휘 뒤에 입안이 붙어 사망 증빙 문서로 공식적으로 발급되었다. 물고입안 외에도 물고장, 물고문자, 물고문안, 검시입안 등 다양하게 불렸다. 1472년(성종 3) 형조에서 입안 3건을 만들어 그중 1건은 시친자에게 주도록 건의한 내용을 통해 조선 전기부터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발급 절차는 ①죽은 자의 친족이 정장→②통주와 이정의 사망확인 보고→③관할 수령의 검시→④검시에 참여한 이들의 진술→⑤진술을 종합한 수령의 물고입안 발급 순이었다. 그러나 공증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한 채 청탁, 뇌물을 통해 발급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존재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산 자를 죽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는 것이었다.

물고입안은 군역 및 신역, 특정 직역에서 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가졌다. 특히 각종 역을 지고 있는 자가 죽었을 때 대신할 사람을 일시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때에 입안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었다. 여기서 물고입안이 여타 다른 입안과 보이는 차별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발급된 매매사급입안, 결송입안, 계후입안, 절수입안 등은 통해 매매, 소송, 입후, 절수지 등에 대한 권리가 뒤따랐다.

그러나 물고입안의 발급은 권리의 보장이라기보다 의무 면제의 용도가 컸다. 즉 사망 확인을 통해 당초 지고 있던 자신의 역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인징의 폐해를 줄여 주는 기능이 작용했다. 본질적으로 관이 중심이 되어 증

빙을 해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세밀한 운용 방안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용도에도 불구하고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빈한한 이들은 즉시 관에 보고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조선 조정은 이러한 폐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그러나 사망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정비만 이루어졌을 뿐 본질적으로 물고입안 자체로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성급히 구제(舊制)를 고치거나 폐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비해 현전하는 물고입안의 매우 적다. 따라서 실물 물고입안이 전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인지되지 못하기도 했다.

현전 물고입안은 6건으로 1건은 관노의 죽음, 3건은 서원 노비, 2건은 정병의 죽음에 대해 발급되었다. 특히 관노 물고입안은 대구속신한 사례로서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대노가 사망할 경우 누가 물고입안을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다. 일반적으로 시친자가 정장을 하여 물고입안을 신청했으나 대노비의 경우에는 속신한 쪽에서 신청을 했다. 또한 1구의 노 사망일지라도 공증을 위해 14명의 진술이 바탕이 되어 물고입안이 발급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물 물고입안을 통해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친자에게 발급되는 입안의 내용과 구조, 문서식,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물고입안과 검안 자료 양자를 비교해서 살펴보지는 못했다. 또한『무원록』,『검고』처럼 검시 관련 지침과 내용이 물고입안에 반영된 정도와 관계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못한 한계점이 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經國大典』. 『大典會通』. 『大典會通』. 『備邊司謄錄』. 『續大典』. 『承政院日記』. 『典錄通考』. 『朝鮮王朝實錄』. 『特敎定式』.

李貴, 『默齋日記』.

成海應, 『周漢雜事考』.

崔溥, 『漂海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覆檢官題音, 208913-12.

제천의병전시관, 1603년 제천관 물고입안.

한국국학진흥원, 1635년 예안관 물고입안.

2. 논저

권수용·문현주·최영희(역),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 문서 1』, 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권이선, 「조선시대 決訟立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 『고문서연구』 52, 2018, 205~234쪽.

김우철,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2010, 207~234쪽.

김호, 「검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향촌 사회 (2): 여성」, 『문헌과 해석』 4, 1998a, 168~179쪽.

김호,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1998b, 155~229쪽.

김호, 「검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향촌 사회 (3)」, 『문헌과 해석』 6, 1999, 135~149쪽.

김호, 「『檢考』, 19세기 전반 지방관의 檢屍 지침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385~416쪽.

백옥경, 「여성과 법, 제도: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경상도 지역의 검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2009, 35~63쪽.

손민정, 「중국어의 '죽다'류 어휘에 관한 고찰」, 『중국문화』 41, 2004, 223~242쪽.

심재우, 「조선후기 人命 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 1997, 215~233쪽.

심재우, 「檢案을 통해 본 한말 山訟의 일단」, 『고문서연구』 50, 2017, 27~49쪽.

심희기, 「朝鮮時代의 殺獄에 關한 연구 (Ⅰ)」, 『법학연구』 25-1, 1982, 243~283쪽.

유덕열, 「조선시대 檢驗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3, 2021, 125~166쪽.

임주희·박성호·김신미, 「세계지도: 중국역대 8폭 병풍의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연구 8』,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1, 50~75쪽.

정진혁,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한국사연구』 196, 2022a, 31~70쪽.
정진혁, 「17~18세기 추국청의 혹형, 낙형 시행 추이」, 『역사학보』 256, 2022b, 177~223쪽.
조영준, 「조선말기 살인사건 조사의 과학성 검토 1895-1907」, 『규장각』 48, 2016, 273~361쪽.
조윤선,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2009, 211~253쪽.
조윤선, 「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민족문화』 58, 2021, 245~285쪽.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한우근·이성무·민현구·이태진·권오영(역주),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문초록

물고입안에서 '물고'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망을 의미하는 어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고려시대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물고라는 어휘 뒤에 입안이 붙어 사망증빙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발급되었다. 물고입안의 발급 절차는 ① 죽은 자의 친족이 정장 → ② 통주와 이정의 사망확인 보고 → ③ 관할 수령의 검시 → ④ 검시에 참여한 이들의 진술 → ⑤진술을 종합한 수령의 물고입안 발급 순이었다. 그러나 공증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한 채 청탁, 뇌물을 통해 발급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존재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산 자를 죽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물고입안을 발급해 주는 것이었다. 다만 물고입안은 군역 및 신역, 특정 직역에서 대정(代定)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가졌다.

투고일 2023. 12. 21.
심사일 2024. 1. 23.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조선시대 사망 확인서(death certificate of the Joseon Dynasty), 검험(檢驗, GumHum), 물고채(*Mulgochae*), 물고입안(物故立案, *Mulgoiban*)

Abstract

Operational Aspect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Joseon Dynasty's Mulgoiban (物故立案)

Kwon, E-Sun

The *mulgoiban* (物故立案) was traditionally a term that meant death in China and Korea. In Korea, it had been used to mean death since at least the Goryeo Dynasty. but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referred to an officially issued document to certify a death . The procedure for issuing a *mulgoiban* was as follows: ① The deceased's relatives made an appeal → ② Reports were submitted by the Tongju and Lee Jeong confirming the death → ③ An autopsy was performed by the head of the jurisdiction → ④ Statements were taken from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autopsy → ⑤ The statement was issued by the Suryeong. However, there were problems of this certificate being issued upon requests or through bribery without proper compliance with the notarization procedure. The most frequent problem was of living persons faking their death so that a *mulgoiban* would be issued. The mulgoiban had the significance of serving as the basis for requesting *Daejeong* in *gunyeok*, physical labor, and Occupational Classifications.